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초구청장 제출(의안번호 제22호)]



2026. 8.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의안검토보고

의안번호	제22호		
의안명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출자	서초구청장(공공인프라과)	제출연월일	2026. 8. 14.
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민희

I

제안내용

1. 제안이유

서초구 청사 등의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운용 중인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하고, 중복조문 등을 정비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금 존속기한 연장 (안 제15조의2)

나. 구에 설치되는 위원회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 정비 (안 제6조의2, 안 제11조)

다.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법」 제15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2026. 07. 09. ~ 2026. 07. 29. (20일), 의견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 평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 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5) 비용추계서 : 별첨

1. 개정조례안의 제출 경위

- 2001년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원금을 이식하는 등 자금의 적립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적립성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2,835,126천원이며, 기금이 설치된 이후 2020년 중앙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용역비 9,573천원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치되어 있음.
- 청사건립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 교부금 및 보조금, 기금 운용 수익금을 재원으로 하는데, 2020년도부터는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만 재원을 조성하고 있음.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집행액>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 액 (a - b)
	계a	전입금	보조금	이 자 수 입	기 타 수 입	계b	비용자성 사 업 비	기타 지출	
계	132,844,699	103,347,532	0	29,497,167		9,573	9,573	0	132,835,126
2019년까지	107,511,650	103,347,532	0	4,164,118	0	0	0	0	107,511,650
2020	2,103,518	0	0	2,103,518	0	9,573	9,573	0	2,093,945
2021	913,981	0	0	913,981	0	0	0	0	913,981
2022	2,837,773	0	0	2,837,773	0	0	0	0	2,837,773
2023	5,406,359	0	0	5,406,359	0	0	0	0	5,406,359
2024	5,362,584	0	0	5,362,584	0	0	0	0	5,362,584
2025	4,765,729	0	0	4,765,729	0	0	0	0	4,765,729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 만료가 도래하였으나 청사의 건립이라는 행정목적은 달성하지 못해 기금의 존치가 필요하여 존속기한의 만료 전에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내용을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전임.

2. 조문별 주요내용 검토

▣ 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제15조의2)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1)제1항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은 달성하기 위해 조례로 설치한 자체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청사건립기금은 서초구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기 위해 2001. 11. 16.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으로

-
- 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례 제정 당시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았음.

○ 그러나 2015. 7. 2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법률 제 13428호)이 개정되면서 2016. 1. 1.부터는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미만으로 설정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부칙 제7조는 경과조치를 두어 2016. 1. 1. 이전에 설치된 기금으로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6. 12. 31.까지로 하였음.

○ 따라서 2016. 11. 17. 제15조의2를 최초로 신설하였을 때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였고, 이후 2021. 10. 28. 조례의 개정을 통해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으며,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6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제15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31년 12월 31일까지</u> 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기금의 설치목적은 달성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

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 이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²⁾에 서초구 청사건립 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을 제출하였으며, 2026. 5. 28.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되었음.
- 서초구청사는 1991.1. 준공된 건축물로 2018.11. 안전진단 D 등급을 받았으며, 현재 건물 곳곳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보수공사를 반복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신청사 건립이 불가피한 상황임.
- 현재 서초구는 구청사와 양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복합환승센터를 연계하여 민간투자 방식의 복합청사* 형태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 중에 있음³⁾. 이를 위해 서초구, 서울특별시, 국가철도공단, 서울교통공사, 신분당선 주식회사, GTX-C 주식회사 등 6개 기관이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GTX-C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라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25. 6.~2030. 12., 총 사업비는 약 48,125,000천원(추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는 민간제안서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의뢰하여 진행 중에 있음.

2)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

③ 당연직위원은 문화행정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재정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의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0. 28.>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 p.18 [붙임] 복합청사개발 추진 현황 및 향후 일정

* 복합청사: 서초구청사 복합개발사업으로 건립 추진 중에 있는 행정·문화·복지·업무 및 기타 편익시설 등이 갖춰진 복합 기능의 서초구 신청사를 말함.

** [1단계]환승코어: 복합청사와 GTX-C철도, 지하철 3호선, 신분당선, 복합환승센터, 주차장, 지상을 연결하는 통로

[2단계]복합청사: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서초구청사 건립

[3단계]민자주차장 개발

- 그러나 민자적격성조사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의 적격성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절차로서 그 결과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와 향후 사업방식 등이 달라질 수 있음.
- 따라서 향후 민자적격성조사 결과 및 관계기관 협의 등에 따라 청사 건립 방식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재원을 적기에 활용하며, 공공투자 등 다른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신청사 건립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청사건립기금을 존치할 당위성이 있어 보임.
- 또한 청사건립기금은 대규모 소요 예산이 수반되는 신청사 건립 사업에 대비하여, 일반회계에서 단기간에 재원을 조달할 때 발생하는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간에 걸쳐 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적립성 기금이라는 점에서, 신청사 건립 방식의 여부와는 별개로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재원을 적립·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위원회 위원 구성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제3항)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③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u>국장 및 소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u>구청장이 위촉한다.</u>

○ 안 제6조제3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서초구의 국장뿐만 아니라 보건소장을 포함하여 개정하고자 함.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4)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르면 보건소는 직속기관에 해당하므로 현행 조례 제6조 제3항의 “구의 각 국장”에는 보건소장이 포함되지 아니함.

- 그러나 현행 조례 제4조에 따른 서초구 청사의 범위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GTX-C 환승수직구 공사가 보건소 부지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보건소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4)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1. 10. 14., 2021. 12. 16.>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기관과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 또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위원 성비의 구성에 관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5)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다시 규정할 실익이 낮음. 따라서 삭제하는 것은 적절해 보임.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복되는 조문 정비(현행 조례 제6조의2 및 제11조 삭제)

- 「(구)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2026. 8. 6.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음.
- 이에 현행 조례 제6조의2제1항부터 제3항은 청사건립기금 심의위

- 5)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여 청사건립기금 관리 및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청사 건립 시기 결정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청사건립기금 심의위원회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다만, 서초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2026. 8. 6. 개정되면서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이 신설되었고, 각종 위원회 조례와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 현행 조례 제6조의2를 삭제하더라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6)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면 되므로 삭제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각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다

6)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1. 5.>	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5.>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6개월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아울러 현행 조례 제6조의2제4항은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개별 위원회의 기능과 특성에 따라 해촉 사유는 달리 정할 수는 있겠으나 이를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공정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를 통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위원회 제도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 그러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촉 규정을 삭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을 따르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현행 조례 제11조는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7)에서 동일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 재규정할 실익이 낮아 삭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 위원회 조 제목 개정 및 간사 조문 이동(안 제5조 및 제9조)

○ 이는 자치법규의 조문에는 해당 조문이 규정하는 핵심적인 내용을 간명하게 요약하여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제목을 표시하며, 안 제 9조는 조문의 제목을 “위원회의 회의 개최 등”→“위원회의 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함.

- 이는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서는 회의의 소집권자,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간사, 사무기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현행 조례 제9조제1항은 의사정족수, 제2항은 의결정족수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회의의 개최라고 표현하는 것은 해당 조문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기에 적절하지 않음.

7) 제13조(수당) 구청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운영”으로 개정하여 조문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현행 조례 제5조⁸⁾는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어 안 제9조와 같이 조 제목을 개정하는 경우 동일한 조 제목이 중복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따라서 현행 조례를 “위원회 설치”로 개정하여 동일한 단어의 제목이 중복되어 자치법규의 해석상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나아가 현행 조례 제6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임에도 제4항은 간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대한 자문에 응하거나 심의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구성할 때에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않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조문은 위원회 위원의 수, 민간위원의 비율 등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고,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에 관한 내용까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며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련한 사항에 해당함.
- 이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6조제4항의 내용을 안 제9조(위원회의 운영)제4항으로 이동하여 조문을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보임.

8) 제5조(위원회 설치·운영)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용어정비, 어문규정 및 자구 등의 수정(제1조, 제6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 제14조 및 제15조)

- 안 제12조제2항은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로 개정하였는데 이는 청사건립기금의 관리위탁을 행하는 주체가 구청장임을 조례에 명확하게 적시하려는 것으로 보임.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u>금고</u> 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운용·관리)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 <u>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 그 밖에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용어, 띄어쓰기, 문장 구조에 맞지 않는 어법 등을 정비하고 중복되는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함으로써 어문규범에 맞는 조례를 통해 명확한 자치법규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사료됨.

Ⅲ 종합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6. 12. 31.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개정을 통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 12. 31.로 연장하고, 아울러 「서울특별시 서초

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와 중첩되는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고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임.

- 2001년 설치된 청사건립기금은 서초구 청사 건립에 필요한 소요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기 위해 설치된 적립성 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2,835,126천원임.
- 한편 1991. 1. 준공된 구청사는 노후화가 심하고 공간이 협소하여 신청사 건축이 요구되는 상황임. 그러나 신청사의 건립에는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반회계로 편성하기에는 예산 확보에 부담이 크므로 연차적인 사업비 조성이 불가피함.
- 현재 서초구는 구청사 부지에 GTX-C 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청사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청사의 준공 시기를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설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로 인해 기금 설치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닐 것임. 민간투자 이외의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노후·협소한 현 청사의 개선 및 신청사 건립 필요성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구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청사 건립은 계속 추진되어야 하므로 기금 준치의 타당성은 충분하다 할 것임.
- 아울러 서초구 청사의 범위에는 보건소가 포함되어 있고, 특히 현재 시행 중인 GTX-C 환승수직구 공사가 보건소 부지에서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6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보건소장을 포함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또한 관계법령이나 기본조례의 성격을 갖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조례에 재규정하지 않도록 하였고, 조문 제목과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체계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법제처의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보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초구청사부지(14,853.9㎡)
- 용도지역: 3종일반주거지역 → 공간혁신구역(일반상업지역)
(용적률 250%) (1,200%이상)
- 사업기간: 2029년 ~ 2034년(민자제안)
- 총사업비: 약 1조 4,201억원
- 건축규모: 지상42층/지하6층, 연면적 246,367.13㎡, 높이 196.5m
- 사업방식: 민간투자방식(BTO)
- 주요시설: **구청사**, **광역버스환승센터**, **연구개발시설**,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 ※ 서울시(도시공간전략과) 공간재구조화계획 별도추진(입안용역 : 도시계획과)

□ 주요 추진경위 (청사+ GTX환승센터+ 환승코어+ 공간혁신구역)

- '15.~2022.: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사업(공공위탁개발) 추진/중단
- 건축비 및 금리 폭등으로 공사비 상승 및 수탁사 현금지원(3천억) 요청
- '23.01~03.: 사업방식 전면 재검토 추진 결정
'20.~2023.: GTX (버스)환승센터 공모선정 및 기본구상 용역(대광위+서초구)
- 남부순환로 지하 지장물 저축으로 **구청사 부지 내에 환승센터 이전 필요성 제기**
'23.12.27. : GTX-C양재역 (철도)실시계획 인가(국토부)
- GTX 수직구가 청사부지 내 계획되며 **청사 개발부지 면적 감소(1,764㎡)**
'23.5~'24.5.: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서울시)
- '서초구청~양재역~환승주차장' **단계별 통합개발 수립, GTX역사 지하화 및 환승코어 제시**
- '23.10~24.12.: '서초타운 및 GTX-C환승시설 통합개발 실행방안 용역 시행(서초구)
'24.04~07.: 서초구청부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구→시→국토부)
- 전국 56개 중 16개 후보지 선정 (**서초구청부지: 도시혁신구역 후보지 선정**)
'24.06~12.: GTX-C 양재역사 지하화 및 환승코어 추진(대광위+서초구)
- 지상역사 지하화 및 환승체계 획기적 개선 : **환승코어 조성 (6개)기관 MOU 체결**

- '25.03~10.: 공간혁신구역지정 관련 서울시(입안권자) 협의
 - 시 전문가 사전 자문회의 추진(2차례) : 공간혁신구역 당위성 및 개발규모 확보
 - 공간혁신구역 지정을 위해 “민자사업”과 “공간재구조화계획수립” 병행 추진 요청
(민자사업 : 구 공공인프라과, 공간재구조화용역 : 구 도시계획과)
- '25.04~07.: 민간제안서 접수 및 KDI/기재부 사전 협의
 - 대상시설 적정성 및 민간투자사업 적격성조사 추진 방안 협의('25.5.8)
- '25.07~11.: 대상시설 적정성 사전검토 및 심의(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심의 통과(원안가결) : 연구개발시설, 환승센터
- '26.01~04.: 민간제안서 사전검토(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 민간제안서 형식적 요건 및 법령 부합여부 등 검토
- '26.05.26.: 민간제안서 철회 및 재접수(부대사업 기간변경 등)
- '26.06~07.: 적격성조사 의뢰, 사업설명회 개최(KDI 공공투자관리센터)

□ 향후 일정

- '27. 04. : 민자적격성조사 완료
- '27. 12. :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시계획 절차 완료
- '27.~'28. : 제3자 제안공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 '29.~'32. : 착공 및 준공(목표) ※ GTX C, 개통 2032년